



##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심장질환 ⑨

### 심폐기능약화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1. 21. 선고, 93구942 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3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3.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 판결요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판결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신안전기에 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유구열

은 1990. 11. 18. 11:00경 소외 박춘호 등과 함께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곳리 소재 전기철탑공사 작업장에서 족장목 철거작업을 하다가 위 박준호가 실수로 떨어뜨린 길이 약 5m, 직경 20cm의 족장목에 뒷머리를 강타당하면서 3m 아래의 땅 바닥에 떨어져 요추 1번압박골절, 뇌挫상, 좌측대퇴부 및 골반부좌상, 제3, 4, 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유구열은 위 상해를 입고 즉시 인근 서산시 소재 용병원에 후송되어 그때로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요양급여로써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1. 그 주거지 인근의 강원 철원군 소재 길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다시 그때로부터 1991. 5. 4. 까지 위 요양급여로써 약 6개월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그 사이인 1991. 1. 16. 부터 같은 달 21. 까지는 인천 소재 중앙 길병원 신경외과 전원하여 치료) 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 퇴원한 사실, 위 유구열은 위와 같이 위 길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1. 5. 15. 요추부동통과 양측하지방사통이 심하여지자 위 길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6. 퇴원을 하였으며, 그때로부터 같은 해 8. 20. 까지 다시 통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 23. 03:00경 주거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사망 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 추정이 된다고 하는 기재가 있을뿐인 사실, 위 유구열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1. 8. 20. 당시 주기적인 약물가루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후유장애만이 남아 있을뿐 보행에 지장이 없었고,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

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유구열의 사망이 앞서 본 상해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라거나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유구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 9408판결; 1992. 2. 25. 선고, 91누 85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우, 위 망 유구열이 1990. 11. 8. 11:00경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요추1번압박  
골, 뇌좌상, 좌측대퇴부 및 골반부좌상, 제3, 4, 5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은 그 상해의 부위  
정도를 보아 상당히 중상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부상하기 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위  
사망 당시는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하여 심폐기  
능이 약화될 정도의 건강상태가 되어 사망하였

## 업무상 재해의 판례

다는 것이며 사망할 무렵 계속적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길병원측에서도 위 망인에게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보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길병원에서 위 망인의 사망 3일 전인 같은 해 8. 20.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평소에는 건강하였던 위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이 악화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인과 경위, 위 망인이 치료를 받던 도중의 신체상태의 병화, 치료의 경과,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위 상해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가공될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위

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하게 된 연유 등을 좀 더 심리하여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